

의정부지방법원 2025. 1. 7 선고 2024가단117358 판결 [손해배상 및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재단법인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12. 3.

판 결 선 고 2025. 1. 7.

주 문

1.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‘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’ 부분을 제외하고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(다만, ‘피고’는 ‘망 E’으로 본다)을 인정할 수 있고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망 E은 2024. 5. 30. 사망하여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피고가 존재하는 사실, 피고는 2024. 8. 20.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(의정부지방법원 2024느단30648)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 E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는 위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진영

별지